

법령코너

기술표준원공고 제2009 - 20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요건은 최소화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로시험(페달링하중, 수직하중, 수평하중) 3개 항목을 추가하고, 브레이크 부품에 석면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산악용 자전거와 혼동할 수 있는 유사산악용 자전거를 일반용 자전거로 분류하고, 산악용에는 '산악용'으로 표시토록 강화
- 업체가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안전요건은 권장사항으로 전환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0. 이륜 자전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 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 기술표준 2009.8